

호적, 이렇게 바뀝니다.

호주제 폐지, 부성원칙의 수정, 친양자입양 제도, 성·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. 1. 1.부터 시행됩니다.

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

- 호주를 중심으로 가(家)단위로 작성되었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
-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
 -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, 가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.
- 호적부 변경사항

호적(부)	→	가족관계등록(부)
호적등·초본(1가지)	→	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(5가지)
본 적	→	등록기준지
취 적	→	가족관계등록상설

-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, 처리한 전산정보 자료 '**가족관계등록부**' 도입

-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

- 가족관계 증명서
(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)
- 기본 증명서
(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사항)
- 혼인관계 증명서
(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·이혼에 관한 사항)
- 입양관계 증명서
(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)
-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
(친생부모·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)

새로운 가족제도 이렇습니다.

-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
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성(姓) 변경제도 시행
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

- 친양자입양제도 시행

-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.
-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됨.
- 일반입양과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,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.
- 일반입양은 협의에 의해, 친양자입양은 재판에 의해 성립됨.
- 일반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, 친양자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.
-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, 친양자입양은 위 관계가 종료.

※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시범 발급

- 기 간 : 2007. 11. 2. ~ 2007. 11. 22.
- 장 소 : 시·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
- 가족구성원이 빠진 경우에는 호적관에서 신고

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됩니다.



대법원

대법원홈페이지 • www.scourt.go.kr



호적이
가족관계등록부로
바뀝니다.

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- 2008. 1. 1.부터



"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."

대법원

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(www.scourt.go.kr)를 참고하세요.

새롭게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란?



호주에 폐지 후 변화하는 가족제도!

